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시행 2022.12.06]

(일부개정) 2022.12.06 조례 제2735호 (조례2735호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인재평생교육
관리책임전화번호 : 650-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의거 순창군내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다문화·다자녀 가족 자녀에게 정규교육과정외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잠재능력을 개발함은 물론 나아가 순창군의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10. 조례 2168>, <개정 2022.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3.5.10. 조례2168>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8.12.17 조례2456>
3.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자를 말한다.
4. 지원할 수 있는 “다자녀가족”이란 세 자녀 이상의 가족을 말한다.
5. “학습활동비”란 예·체능학습시설 및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습시설에 소요된 수강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범위)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다문화·다자녀 셋째아 이상의 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자와 학생이 순창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개정 2013.5.10. 조례2168>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지원 대상 학생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결정한다.<개정 2013.5.10. 조례2168>

제5조(지원방법) ① 학습활동 지원은 대상 학생이 학습하고 있는 순창군 소재 학습시설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5.10. 조례2168>

② 지원금은 월 학습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참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2.28. 조례2162>

③ 기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보조대상시설, 보조율, 보조대상기간,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에 따른 절차 등은 학습시설운영협 의체 등과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학습시설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하여 학습활동비를 지원받는 학습시설등은 지원대상 학생의 출석과 학습지도, 지원금의 관리 에 신의 있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음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제반 책임을 진다.<개정 2013.5.10. 조례2168>

<개정 2013.5.10. 조례2168>

제7조(기타사항) ①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조례2249>

② 이 조례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2.28 조례21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5.10. 조례21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31. 조례2249>(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1항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순창군 조례 제2025호, 2010. 12. 31)」와 「순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순창군 조례 제2185호, 2013. 07. 15)」는 각각 폐지한다.

제5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12.17. 조례2456>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 (생략)

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